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보수규정 일부 개정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6월 2일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장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규정 제91호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보수규정 일부 개정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신분변경 시 연봉계산 시 강등에 관한 사항 신설

제11조 징계처분기간의 연봉감액 시 강등에 관한 사항 신설

제19조 징계처분기간의 봉급감액 시 강등에 관한 사항 신설

제25조의1 강등 시 호봉확정에 관한 사항 신설

제27조 승급·승진의 제한기간 시 강등에 관한 사항 신설

제30조 징계처분기간 중 강등 시 정근수당 감액 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

제34조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과 상이한 가족수당 지급 기준 및 중복지급 제한 기관 중 화성시 신규 설립된 화성산업진흥원 추가 및 징계처분기간 중 강등 시 가족수당 감액 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

제40조 수당지급의 제외기간 중 강등에 관한 사항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얻은 후 2021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